

제 호

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

1. 기관(단체)명:

2. 대표자:

3. 소재지:

4. 진단 기술 분야:

위 기관 또는 단체를 「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지식재산처장

직인